

[별지 제1호 서식]

규정류(제정·개정)입안서

1. 규정류명 : 지역사회협력 활동 지원 규정
2. 규정류(제정·개정)사유 : 장안대학교가 보유한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규정을 제정한다.
3. 주요내용 : 장안대학교가 보유한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.
4. 시행 예정 또는 요청일 : 2026년 5월 예정
5. 참고사항
 - 가. 관련규정
 - 나. 예산조치
 - 다. 관련부서 : 산학협력처(단), 취·창업지원센터, 학생지원처, 교무처, 평생교육원, 총무처, 입학처, 미디어홍보센터, 학술정보관, RISE사업단

2026년 4월 15일

소관부서 : 산학협력처 *주원환 주원환*

관련부서 : 산학협력단 *주원환 주원환*
 취·창업지원센터 *김정숙 (인)*
 학생지원처 *배각은 (인)*
 교무처 *류계리 (인)*
 평생교육원 *원경아 (인)*
 총무처 *장희래 (인)*
 입학처 *김소영 (인)*
 RISE사업단 *주원환 주원환*
 학술정보관 *김시연 (인)*
 미디어홍보센터 *이수현 (인)*

규정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

지역사회협력 활동 지원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장안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역사회의 범위)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범위는 우리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그 밖의 지역은 위원회의 동의를 있을 경우 지역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.

제3조(업무) 지역사회협력 활동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 지역사회협력 활동 추진계획에 관한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
- ② 지역사회협력 활동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
- ③ 지역산업 발전, 지역사회 현안과제 해결, 지역 취·창업 활성화 지원
- ④ 대학 내 전문 인력 지역사회 활용, 지역연구과제, 지역정책개발, 지역사회 참여 멘토링 등
- ⑤ 지역 학생(초·중·고) 교육 지원 및 영·유아 보육 교육지원
- ⑥ 지역사회 대상 대학 교육시설 개방 및 교육 기자재 공동 활용 공유
- ⑦ 기타 지역사회 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지역사회협력활동위원회) 지역사회협력 활동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협력활동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를 둔다.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.
- ② 당연직 위원은 학생지원처장, 총무처장, 산학협력처장, 평생교육원장으로 한다.
- ③ 임명직 위원은 교직원 중에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는 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직자의 경우에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① 지역사회협력 활동에 관한 수요 분석 및 계획 수립
- ② 지역사회협력 활동 운영 및 지원
- ③ 지역사회협력 활동 성과분석 및 환류
- ④ 기타 지역사회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

제7조(회의)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8조(주관부서 및 담당부서) 지역사회협력 활동에 관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고, 별표와 같이 담당부서를 정한다. 다만, 담당부서는 구체적 활동 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9조(추진실적 평가)

- ① 담당부서의 장은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 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

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.

② 주관부서는 담당부서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매년 종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10조(환류체계)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를 통해 협력활동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이후의 협력 활동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1조(보칙)

① 지역사회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가. [별표] 지역사회협력 활동 부서별 업무분담표 <재정 2026.04.>

업무 유형	주요내용	담당부서
지역사회협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자체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■ 지역사회협력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■ 지역상권 및 경제 활성화, 도시재생 지원 등 ■ 지역사회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 지원 ■ 지역사회 연구, 프로젝트 참여, 지역 정책개발, 지역사회 참여 멘토링 등 ■ 지역사회 축제 등 참여 	산학협력처 (주관부서)
지역사회 유관기관 MOU 체결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역사회 유관기관, 지역협의체 MOU 체결 ■ 지역산업 발전 기여 ■ 지역사회 취·창업 활성화 지원 ■ 청년창업지원, 사회적 기업 지원 등 	산학협력처(단) 취·창업지원센터 RISE사업단
지역사회 교육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학 내 전문인력(교원) 지역사회 활용 ■ 지역 학생(초·중·고) 교육 지원 ■ 영·유아 보육 교육 지원 	교무처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학생 지역사회 봉사 ■ 노인·장애인·청소년 복지 ■ 교직원 지역사회 봉사 	학생지원처
지역사회 평생교육 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역주민 교양강좌 등 지역주민역량 강화 ■ 지역사회 평생직업 교육과정 운영 등 	학술정보관 평생교육원
지역사회 활동실적 대학홍보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역사회 활동실적 대학홍보 활용 등 	입학처 미디어홍보센터
지역사회 시설 공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학캠퍼스 및 시설 개방 등 ■ 대학 내 유휴부지 공간 활용 및 시설 대관 	관리팀